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211호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홍태의 의원 등 7명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11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15.

대표발의자: 홍태의

공동발의자: 조용훈, 조배식,
서승필, 장진호
이태모, 윤금숙

1. 제안이유

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근의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(안 제3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4조)
- 다. 지원금 반환(안 제8조)
- 라.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(안 제9조)
- 마.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(안 제10조)
- 바. 주차거부 등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주차장법」 제3조
- 나. 조례안예고: 2023. 11. 15. ~ 11. 19.(5일간)

□ 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,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.
2. “공공기관”이란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과 소속기관, 출자·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범위와 기간) ①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거지역, 상업지역 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으로 주차면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할 것
2. 하루 7시간 이상,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
3.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,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.

제4조(지원대상 및 지원금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,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당으로 환산한 금액의 1%를 연간 사용료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 신청)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금 결정 및 지급)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,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.

제7조(지원금 변경·취소)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·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·취소할 수 있다.

1.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
3.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
제8조(지원금 반환)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
2.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
3.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방치차량에 대한 조치)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)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

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.

제11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,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
2.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
3.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
4.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

제12조(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)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시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,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, 주차장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.

1. 주차장의 이용시간
2.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
3.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
4.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,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
5. 그 밖의 주의사항

제13조(주차거부 등)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

2.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

4.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

5.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

6.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
7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4조(감독)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홍태의 의원 등 7명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주차장법」

제3조(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·용도지역·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(이하 “조사구역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(需給) 실태를 조사(이하 “수급실태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-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·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